공유재산(화정2동 청사부지)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: 1999. 11. 30.

나. 제 출 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12. 18

라. 상정일자 : 제91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제6차 사회도시위원회(1999. 12. 2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적과장 기 영 도)

가. 제안이유

○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
○ 동 규정에 따라 1999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(화정2동 청사부지)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나. 주요골자

○ '85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신축한 화정2동 청사가 노후, 협소하여 동민의 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신축을 위해 100평 규모의 부지를 화정2동 관내에서 선정하여 매입코자 합니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 화 순)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음.

○ 현 화정2동 청사는 1985년도에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준공된 115평 (1층 72평, 2층 43평) 규모의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

○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익제공을 해 오던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또는 정보제공 등 동민의 집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,

○ 복지시설 기능과 생활정보서비스 등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 참여와 대화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.
제 출 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□ **제안사유**

○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
○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(화정2동 청사부지)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관리계획내용**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○ '85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신축한 화정2동 청사가 노후,협소하여 동민의 집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신축을 위해 100평 규모의 부지를 화정2동 관내에서 선정하여 매입코자 합니다.

□ **재산취득 승인 요청**

○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330㎡ (100평) 규모로 소요예산액은 약 280,000천원이 되겠습니다.

○ 소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 **취득방법**

○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**참고사항**

○ 덧붙임 : 화정2동 청사부지 확보계획 사본 1부.

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· 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1	대지	화정2동 관내 적정지 선정	330㎡	280,000	1999~2000	화정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	미정	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 취득